

# 과천도시공사 이사회운영규정

제정 2019.12.31. 규정 제3호

개정 2022.5.11. 규정 제7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(개정 2022.5.11.)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3조(의결사항)**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조직·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6. 중요한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, 위탁에 관한 사항
8.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
9.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
10.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**제4조(소집 및 의장)**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
②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

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**제5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과 결산의 승인
3. 정관 변경
4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
④ 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6조(재심요청)**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임직원의 출석)**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권한의 위임)**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부의절차)**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사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사회운영 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 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② 주관부서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인 이사회 의사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,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,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

서와 함께 배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의안설명)**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당해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설명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1조(의사록 작성)** 의사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장과 출석한 이사·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의결사항 통보)**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(별지 제5호서식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이사회 사무관리)**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
3.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**제14조(의사록 등의 보존)** 이사회의 의사록, 서면결의서(별지 제6호서식) 및 부의 원안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위임장 제출)** 이사회에 대리참석 하는 자는 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실비변상)** ① 공사 소속이 아닌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지급은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개정 2022.5.11. 규정 제77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“상임이사(본부장)” 을 “상임이사”로 한다.

②부터 ⑦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  
(제9조 관련)

### 이사회 부의안건

제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	의안번호	제 호
의 제			
구 분	의 결 사 항	보 고 사 항	

제 안 자

주 문

제안사유

의결사항

참고사항

1. 제안근거

2. 예산조치

3. 합의

4. 절차

5. 기타

[별지 제2호서식]

**이사회 의사 관리대장** (제9조 관련)

회의차수	일자	의안번호	건명	제안부서	의결(보고)내용

[별지 제3호서식]  
(제9조 관련)

## 이사회 소집통지서

수 신 :

년도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이사회 일시 : 년 월 일 시 분

2. 이사회 장소 :

3. 부 의 안 건 : 별 첨

년 월 일

과천도시공사 이사회의장 (인)

[별지 제3-1호서식]

(제9조 관련)

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상정안건

안전심의

보고사항

[별지 제4호서식]

(제11조 관련)

년 월 일 제 회

이사회 의사록

안건심의

과천도시공사

(별지 제4-1호서식)

(제11조 관련)

## 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일시출석·심의안건

○ 일 시 : 년 월 일( 요일)

자 : 시 분

지 : 시 분

○ 장 소 :

○ 총이사수 : 인

○ 감사 : 인

○ 출석이사수 : 인

○ 감사 : 인

○ 의장 :

의장이 년도 제 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의거 사장  
(관계직원)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(별첨)과 같이 토의  
및 의결하고 산회한다.

년 월 일

과천도시공사

[별지 제4-2호서식]

(제11조 관련)

### 의 안 목 록 표
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명 :			
의결내용 :			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명 :			
의결내용 :			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명 :			
의결내용 :			

[별지 제4-3호서식]

(제11조 관련)

년 월 일 제 회 이사회 토의심의 진행 회의록

진행(발언자)	심 의 토 의 내 용

[별지 제4-4호서식]

(제11조 관련)

년 월 일 제 회 이사회이사감사서명록

년 월 일

과천도시공사

위 심의·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, 감사 서명  
날인함.

직 위	성 명	서 명 날 인

[별지 제5호서식]

### 이사회 심의 결과 통보서 (제12조 관련)

수 신 :

참 조 :

제 회 이사회(20 . . . )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— 다 음 —
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 명			
의결내용 :			

200 년 월 일

과천도시공사사장

[별지 제6호서식]

(제14조 관련)

## 제    회    이사회    서면결의서

제    목    :

표제의 별첨 사항을 이사회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 
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 날인 바랍니다.

20    년    월    일

과천도시공사사장 (인)

직    위	성    명	의    견	서    명	비    고
사        장				
상    임    이    사				
비상임이사				
비상임감사				